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79호 2021. 7. 2.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13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14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5
- 삼척시 고시 제115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7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735호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8
- 삼척시 공고 제738호 2022년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계획 공고 ----- 14
- 삼척시 공고 제739호 삼척시 공동체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1
- 삼척시 공고 제751호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1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1 - 113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29.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502-52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502-52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방재단지 예정지 명칭 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73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 으르기존도로명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847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 으르기존도로명활용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092-19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 으르기존도로명활용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1길 17-3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 (덕산해변길분기)
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15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135-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81-8	20210629	신축	20090626	행정구역,위치활용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486-9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위치활용
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해변길 50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용화해수욕장명칭 활용
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1길 13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 구역명사용 (초곡길분기)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도로명주소	폐지					
		계	10건					
폐지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502-52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방재단지 예정지 명칭 활용	공가
폐지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73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 기존도로명 활용	세광건설증기
폐지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847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 기존도로명 활용	주택
폐지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092-19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 기존도로명 활용	주택
폐지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1길 17-3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 (덕산해변길분기)	주택
폐지	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15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민박
부여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135-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81-8	20210629	신축	20090626	행정구역, 위치 활용	
폐지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486-9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행정구역, 위치 활용	
폐지	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해변길 50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용화해수욕장명칭 활용	바다수퍼
폐지	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1길 13	폐지	20210629	건축물대장말소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초곡길분기)	주택

삼척시 고시 제2021-114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4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와 해당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삼척시장

가. 실효사유

- 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경과 시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 도시공원 결정 고시 후 10년 경과 시까지 공원조성계획 미 고시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전두주차장	도계읍 전두리 181-64번지 일원	2,082	감) 2,082	-	2000.12. 8. (삼척시고시 제109호)	최근고시: 2018. 4.13. (삼척-49호)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전두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도계읍 전두리 181-64번지 일원 • 주차장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 일부 집행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후 집행 미완료 -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가능 시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최근고시일)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공원	근린공원	근덕면 동막리 80-2번지 일원	12,838	감) 12,838	-	2009. 6. 5. (강원도고시 제204호)	소방방재산단, 자연녹지지역 (2018. 8.17.)
폐지	1	공원	수변공원	근덕면 동막리 207번지 일원	28,113	감) 28,113	-	2009. 6. 5. (강원도고시 제204호)	소방방재산단, 자연녹지지역 (2009.11. 6.)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근덕면 동막리 80-2번지 일원 • 공원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 실패 - 공원 결정 후 10년 내 조성계획 미수립
1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근덕면 동막리 207번지 일원 • 공원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 실패 - 공원 결정 후 10년 내 조성계획 미수립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지형도면: 붙임 참조

라. 본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고시 제2021-115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해당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일

삼척시장

가. 계획취지

- 「국토계획법」 제2항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나. 위치: 삼척시 정하동 187-5번지 일원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조서: 별도 첨부

라.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도 및 지형도면

-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및 토지이음(www.eum.go.kr) 등재

마. 본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1-735호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환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입금 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료의 환불 규정 개정 및 각 호 조항 신설(안 제13조)

- 기존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로 개정
- 환불 조항에 편도 또는 왕복 이용료 납부 후 탑승 전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 신설

나. 수입금 납부 기준 변경 및 각 호 삭제(안 제26조)

-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 수입금은 다음 날 금고 업무 개시일에 납부한다.

다. 제13조 환불 규정 개정에 따른 운송약관 개정(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해양관광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상케이블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593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54-31, 해양관광센터
해상케이블카

- 전 화: 033-570-4608

- 팩 스: 033-570-4196

- E-mail: zzang3396@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편도 또는 왕복 이용료 납부 후 탑승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수입금의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 수입금은 다음날 금고 업무 개시일에 납부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운송약관(제18조제7호 관련)

1. 탑승권은 발매 당일에 한하여 사용 및 환불 할 수 있으며, 사용된 탑승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왕복권 구입 후 편도 이용 시 왕복요금에서 편도요금을 제한 금액만을 환불합니다.
2. 다음의 경우 탑승권은 무효이며 회수됩니다.
 - 위조 또는 변조된 탑승권
 - 대인이 이용한 소인용 탑승권
 - 기타 부정하게 이용된 탑승권
3. 「궤도운송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여객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단 장애인의 보조조건은 제외함
 -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 신체를 궤도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 그 밖에 궤도차량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정거장 외 전망대, 산책로 및 계단 등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5. 심신허약자나 임신부,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은 승차를 자제해 주십시오.
6.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과도음주자, 질서문란자, 행동이상자 등)는 승차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는 탑승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운송약관이 정한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조(이용료의 환불)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u>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한다.</u></p> <p>1. ~ 3. (생략)</p> <p><u><신설></u></p> <p>② (생략)</p> <p>제26조(수입금의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p> <p>1. <u>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단, 금고 마감시간 이후라도 지정된 기관 또는 방법에 의한 불입이 가능한 경우 당일 수입금을 완불하는 것으로 한다.</u></p> <p>2. <u>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다음 날 수입금에 합산하여 불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달리하여야 한다.</u></p> <p>3. <u>위탁에 의한 운영 및 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비 및 운영비 등 유보금은 별도로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u></p>	<p>제13조(이용료의 환불) ① ----- ----- <u>경우에</u> <u>는 전액 환불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편도 또는 왕복 이용료 납부 후 탑승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수입금의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 수입금은 다음 날 금고 업무 개시일에 납부한다.</p>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1 - 738호

2022년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계획 공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계획을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삼척시장

I. 공고기간 : 2021. 6. 30.(수) ~ 2021. 8. 16.(월)

II. 지원계획

- 사업명 : 2022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지원규모
 - 일반세대 : 세대당 수요가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70%이내 지원(최대 2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가구
 - : 세대당 수요가 시설분담금, 인입배관 분담금 70%이내 및 일반시설분담금 전액지원(최대 300만원)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조례개정 및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토지경계 내 세대별 “내관공사 및 보일러 교체비” 는 지원에서 제외됨

Ⅲ.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21. 6. 30.(수) ~ 2021. 8. 16.(월)
- 신청방법
 - 도시가스 공급 희망구역의 공급가능 여부를 도시가스사에 확인하고 신청구역의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033-520-2100
- 신청서류
 -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 접 수 처 : 삼척시청 경제과(별관2층) ☎033-570-3358

Ⅳ.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삼척시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강원도 고시에서 정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제반 여건을 분석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
 -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역
 - 후보지역이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차기년도에 우선 선정
- 지원 제외 대상
 - 도시가스 배관이 없는 공급 불가지역
 -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한 지역
 - 경제성 미충족 지역 중 100미터 당 10세대 미만 가구
 -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에서 개별적 신청자
 - 경제성 충족 지역(100미터 당 48가구 이상)
 -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

V. 기타사항

-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지역을 선정 추진합니다.
- 보조금 지원 절차는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합니다.
- 공사비 등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청서류 중 별지 제1호 서식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신청서」의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내역(지원금액란 제외)을 먼저 작성한 후 기타 내역은 도시가스사에 문의하여 작성합니다.
- 문의처 : 삼척시청 경제과 (☎033-570-3358)
 참빛영동도시가스(주) (☎033-520-2100)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①단위 사업명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현 주소	(전화 :)		
⑤가구수(세대수)				
⑥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 공사종점 :		
⑦배관연장		M		
⑧ 도시가스공급확인		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 지역임을 확인합니다. (인)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뒷면)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내역

일련 번호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건물 소유자	계량기 설치대수	지원금액 (천원)	서명

※ 여백 부족 시 별지 작성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삼척시장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내용
수집·이용 목적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계량기 설치대수 건물소유자 성명, 소유자와의 관계(본인이 아닐 경우 연락처 작성)
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2022년도 사업종료 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마 을 전체의 수요가분담금 증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구분	내용
제공받는 자	참빛영동도시가스(주)
제공 목적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수행 및 공급계약체결 등 원활한 업무 수행
제공하는 항목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계량기 설치대수 건물소유자 성명, 소유자와의 관계(본인이 아닐 경우 연락처 작성)
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2022년도 사업종료 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마 을 전체의 수요가분담금 증가 등 공급계약체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 공고 제2021-739호

「삼척시 공동체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삼척시장

삼척시 공동체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폐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공동체정원의 이용료 징수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공동체정원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공동체정원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다. 공동체정원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라.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마. 이용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바.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사.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20일까지 삼척시장(참조 : 전략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전략사업과
- 2) 전화 : 033-570-4032
- 3) 팩스 : 033-570-3186
- 4) 전자우편 : babeq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공동체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공동체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 지역의 폐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공동체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동체정원을 이용하거나 체험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이란 공동체정원 내에 설치된 방갈로, 게스트하우스, 야영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조성한 공동체정원에 적용한다.

② 마을공동체의 관할구역은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대상지의 리·통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체정원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리·통 및 해당 읍·면·동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체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명칭 및 위치) 공동체정원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삼척미로정원 :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167번지 일원
- 2. 삼척두타정원 :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642번지 일원

제6조(공동체정원의 지원) 시장은 공동체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공동체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 2. 마을공동체 주민 네트워크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체정원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무
- 2. 시설물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무
-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무 등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운영시간·휴무일 및 예약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를 위탁계약서에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방법,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한다.

제8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공동체정원 내 각종 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중 숙박시설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하여 이용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공동체정원 시설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준용) 공동체정원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운영 중인 공동체정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설이용료(제8조 관련)

1. 삼척미로정원

○ 숙박시설

구 분	기준인원	이용시간	이용요금	
			성수기	비수기
방갈로	4인/1동	당일 15:00~ 다음날 11:00	60,000원	40,000원
황토방	8인/1동		100,000원	80,000원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성수기 : (여름 시즌) 7.15.~8.24. / (겨울 시즌) 12.20.~2.20.

○ 야영장

구 분	규 격	이용시간	이용요금
데크 시설	4.0m×4.9m/1동	당일 15:00~ 다음날 11:00	20,000원

○ 투명카누 체험

운영시간	기준인원	체험시간	이용요금	비 고
09:00~18:00	2인/1대	1시간	10,000원	상시 운영 (동절기 예외)

○ 두부 만들기 체험

운영시간	체험시간	이용요금		비 고
		6세~12세	13세 이상	
(1회차) 09:00 (2회차) 15:00	50분 내외	7,000원	10,000원	단체는 별도 체험시간 협의 운영 가능

※회차당 10인 이상 가능(2일전 사전예약 필수) / 6세~12세는 15명~20명까지 가능

2. 삼척두타정원

○ 레이싱-카 체험

운영시간	체험시간	탑승대상	이용요금
10:00~17:00	20분	초등학생과 4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3,000원

[별표 2]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 숙박시설

구 분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또는 예약당일 취소	100% 환급	100% 환급	100% 환급	100%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90% 환급	80%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70% 환급	60%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50% 환급	40%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20% 환급	10%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90% 환급	80%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80% 환급	70% 환급

※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숙박업 기준 참조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 ④ (생략)

④ 법 제27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 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 ⑥ (생략)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공동체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1-751호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삼척시장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명예시민증 수여 자격을 구체화하고 명예시민 수여결정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명예시민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 적격자 선발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 기존 :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변경 :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라.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마.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바. 명예시민증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사.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아. 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총무과(자치행정부서)
- 전화 : 033-570-3237
- FAX : 033-570-3133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자격)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삼척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등)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추천한다.

② 시장은 추천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4조에 따른 삼척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수여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명예시민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명예시민 선정의 적격 여부
2.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② 위원회는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한 삼척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예시민증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명예시민증 서식)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6조(예우)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1. 시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 2. 각종 교육 강사초빙 및 시정홍보자료 등 제공
- 3.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② 시장은 명예시민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한다.

제7조(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제3조제1항 관련)

1. 수여대상자(피추천인) 인적사항

사 진	성 명	(한글) (자국어) ※ 외국인일 경우 기재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small>* 외국인의 경우</small>		성 별	
	소 속		직 업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이메일	

2.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공적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4. 추천사유

-
-
-

5. 추천인

- 소 속 :
- 성 명 : (인)
- 전화번호 :
- 이 메 일 :
- 추천 일 :

[별지 제2호서식]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서(제3조제1항 관련)

수여 대상자(피추천인)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위 본인은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삼척시 명예시민증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수여의 취소 등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사항” 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경우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신고의무 사항

구분	신 고 의 무 사 항	있음	없음
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사실		
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사실		
3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실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수여 대상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수여 결정·취소 시 홈페이지 게재, 수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명예시민증 발급 및 재교부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공적사항, 주요경력,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은 영구, 추천서 및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서는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3호서식]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명단(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직업	공적요지
1					
2					

[별지 제4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서(제5조 관련)

1. 내국인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소속·직업)

(성명)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 (인)

규 격	비 고
기본규격 : 210mm×290mm 인쇄용지 : 특급 ※ 변형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탕 : 흰색 ○ 글씨 : 검정색

2. 외국인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소속직업)

(성명)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강원도 삼척시장 ○○○ (인)

NO_____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Position / Occupation)

(name)

In appreciation for your outstanding contributions and untiring dedication to Samcheok City, I present this certificate on behalf of the citizens to cherish and remember the bond and friendship.

month day year

Mayor _____

Mayor of Samcheok City,
The Republic of Korea

[별지 제5호서식]

명 예 시 민 증(제5조 관련)

1. 내국인

(앞면)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사진)	성 명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뒷면)

주요관광지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시 운영 관광지 출입 시 본 증을 제시하면 삼척시민에 준하는 입장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삼척시기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033) 572-2011 / 우 25914 http://www.samcheok.go.kr

2. 외국인

(앞면)

NO _____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Photo)	Name: ○ ○ ○	Date of Birth: _____
	month day year	
Mayor of Samcheok City		

(뒷면)

Photos of major tourist attra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 admission fee discount equivalent to Samcheok citizens will be applied if you present this certificate when entering a tourist attraction operated by Samcheok City. · This certificate cannot be transferred or sold to another person. 	
City flag	296, Jungang-ro, Samcheok-si, Gangwon-do (033) 572-2011 / Zip code 25914 http://www.samcheok.go.kr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